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20. 9. 3. ~ 2020. 9. 11.)

일 반 의 안

(의안명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0 - 8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 80
----------	-----------

제출일자 : 2020.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개요

- 재해기간 : 2020. 7. 28. ~ 8. 11.
- 재난유형 : 집중호우
- 피해현황

【단위 : 명, m²】

구 분	피해자수	피해면적	비고
계	1,605	601,326	
매 물	927	432,631	
유 실	678	168,695	

나. 감면내용

- 세 목 : 9월분 재산세(토지)
- 대 상 : 집중호우에 따른 매물·유실된 토지
- 감 면 율 : 9월분 재산세액 전액 감면
- 감면현황

【단위 : 명, 필지, m², 원】

수혜자수	필지수	면적	감면 예상액	비고
1,177	1,673	5,219,092	16,144,564	

다.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피해조사 된 토지 : 직권 감면
- 누락된 토지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추가 감면

3. 기타사항

사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4. 참고사항 : 붙임

- 감면 추계액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감 면 추 계 액

I. 감면요인

- 7 ~ 8월 집중호우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극복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감면액 발생

II. 추계의 전제

1. 재난관리포털사이트(NDMS)에 조사·입력된 매몰·유실 토지를 대상
2. 피해조사 된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전액 감면
3. 기존 비과세·감면 토지의 경우 감면 유지
→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사항에서 배제(중복 감면)

III. 산출방법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

III. 추계 결과

【단위 : 명, 필지, m², 원】

수혜자수	필지수	면적	감면 예상액	비고
1,177	1,673	5,219,092	16,144,564	

※ 재산세 감면에 따른 부가세인 교육세 2,690,760원 포함

<수혜 감면 액수별 추계액>

【단위 : 명, 필지, m², 원】

수혜 감면액	인원	필지수	면적	총 감면액	비고
계	1,177	1,673	5,219,092	16,144,564	
100,000~300,000	5	10	370,577	1,118,275	
50,000~100,000	16	48	497,272	1,156,529	
25,000~ 50,000	96	214	1,355,208	3,923,675	
10,000~ 25,000	311	517	1,777,464	5,829,020	
57~ 10,000	749	884	1,218,570	4,117,066	

IV. 부대의견

- 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것으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을 확충

관 련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